

KR A-08010

Rev.1, 01.May 2014



검수시설 일반사항



2014. 05.



한국철도시설공단

목 차

1. 일반사항	1
2. 용어의 정의	1
부록 1. 검수규모산정 참고자료	3
1. 차량의 종류 및 제원	3
1.1 기관차	3
1.2 편성차	3
2. 차량별 검수종류 및 소요시간	4
2.1 기관차	4
2.2 편성차	6
3. 차량별 청소종류 및 소요시간	9
3.1 고속차량	9
3.2 전기동차	9
3.3 디젤동차	9
3.4 객차	9
4. 차량의 종류 및 제원	10
4.1 전기기관차	10
4.2 디젤전기기관차	11
4.3 고속차량	13
4.4 디젤동차	17
4.5 전기동차	18
4.6 객차	19
4.7 발전차 제원	22
4.8 엔진·발전기 제원	23
4.9 화차(각종)	24
부록 2. 운영비품 적용기준(차량기지)	30
RECORD HISTORY	31

1. 일반사항

(1) 기본방향

철도차량의 신뢰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시설로써 효율적인 검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근무자의 안전성과 작업공정을 고려한 시설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본 설계지침은 철도건설법 제2조에 정의한 철도차량기지 및 역구내 검수시설 설계에 적용하여야 하며, 본 설계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설계기준 및 공단 각 분야의 설계지침을 준용하여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검수시설의 분류

검수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검수체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수하는 일상검수시설, 정기검수시설 등의 예방검수시설과 고장 발생 등에 따라 하는 임시검수시설로 구분한다.
- ② 검수형태별로 경정비시설과 중정비시설로 구분한다.
- ③ 차종에 의해 기관차검수시설, 편성차검수시설, 화차검수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철도차량유지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검수시설”이라 함은 철도차량의 전문 유지보수를 위한 차량기지(중수선, 경수선), 역 검수시설(주박시설, 사업소) 등이 있으며,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및 청소, 유치를 위한 시설과 부대지원시설을 말한다.
- (2) “검수시설의 건설”이라 함은 철도차량검수시설의 신설 및 기존시설의 개량을 말한다.
- (3) “차량기지”라 함은 검수시설을 갖춘 독립적인 시설을 말한다.
- (4) “역 검수시설”이라 함은 정거장 구내의 측면에 위치한 검수시설을 말한다.
- (5) “주박시설”이라 함은 정거장에 철도차량을 유치하고, 간단한 점검과 청소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 (6) “중정비 시설”이라 함은 철도차량이 차체와 주행장치 등을 분리하여 각각의 부품을 정비하는 정기검수와 차륜교환(NWC), 임시검수, 특종검수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검수시설을 말한다.
- (7) “경정비 시설”이라 함은 일상검수와 정기검수 등 제반의 차량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검수시설로 중수선시설을 제외한 모든 검수시설을 말한다.
- (8) “편성차량”이라 함은 고정편성으로 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 (9) “유치선”이라 함은 정거장 및 차량기지 등에서 차량을 유치하기 위한 선로로, 차량의 착발, 차량의 조성 등을 시행한다.
- (10) “검수선”이라 함은 차량의 검사, 수선, 기능시험, 분해조립 등의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선로를 말하며, 일상검수선, 정기검수선, 임시검수선 등이 있다.
- (11) “청소선”이라 함은 차체의 묵은 때 제거 및 차량의 외부 및 내부 청소, 오물처리 등을 시행하기 위한 선로로 일상청소선과 전반청소선 등이 있다.
- (12) “임시검수선”이라 함은 철도차량의 임시검수를 시행하기 위한 선로를 말한다.
- (13) “공기청소선”이라 함은 철도차량의 검수 또는 검수 전후 차량의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선로를 말한다.

부록 1. 검수 규모 산정 참고자료(전체 삭제)

1. 차량의 종류 및 제원(삭제)

1.1 기관차(삭제)

1.2 편성차(삭제)

2. 차량별 검수종류 및 소요시간(삭제)

2.1 기관차(삭제)

2.1.1 디젤전기기관차(삭제)

-----이 하 삭 제 -----

부록 2. 운영비품 제공기준

- (1) 후생동 : 기능유지시설 일부 비품 제공
 - 강당(커튼, 고정식의자, 국기걸이대), 공용샤워실 락커 등
- (2) 주 방 : 기능유지시설 고정식 주방설비기구 제공
 - 썬크대, 조리대, 배식대, 배기후드, 가스취반비, 가스회전식국솥, 선반 등
- (3) 검수동 : 검수장비에 포함된 공구류를 제외한 일반유지보수용 공구 미 제공
 - ※ 철도공사와 실시설계 협의시 장비유지보수를 위한 특수공구를 도면 및 제작사양 포함하여 요구할 경우 반영
- (4) 차량기지 내 : 안전시설물(안전표지판 등)은 제공



RECORD HISTORY

Rev.0('12.12.5) 철도설계기준 철도설계지침, 철도설계편람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준 체계를 국제적인 방법인 항목별(코드별)체계로 개정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이용하는데 목적을 둬.

Rev.1('14.05.01) 건축/설비분야의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저비용·고품질의 철도건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워크숍을 통한 설계기준 개선과제 발굴사항을 반영함